

19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

의안번호

214

제출년월일 : 1993. 12

제 출 자 : 사하구청장

□ 제안이유

부산직할시사하구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 1항의 규정에 의거 '9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에 대하여 구의회 동의를 얻고자 함.

2. 주요골자

- 공유재산 매각 : 구평동사무소(토지, 건물)

3. 매각재산의 표시

구 분	소 재 지	지 목	면 적	공 시 지 가 (과세시가)	소 유 자
토 지	구평동 207번지	대	218.2	196,200	부산시 사하구
건 물	구평동 207번지	철근콘크리트 스라브	164.7	20,258	부산시 사하구

4. 매각사유

- 감천항 개발 계획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감천항 임항도로개설 계획부지 내에 구평동 사무소가 편입되어 부산지방해운항만청에 상기 재산을 매각코자 함.

5. 매각방법

- 감정평가기관(2개소)의 가격감정 후 매각조치

- 관련규정

-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5조의 4 - 보상액의 산정 등

6. 관련법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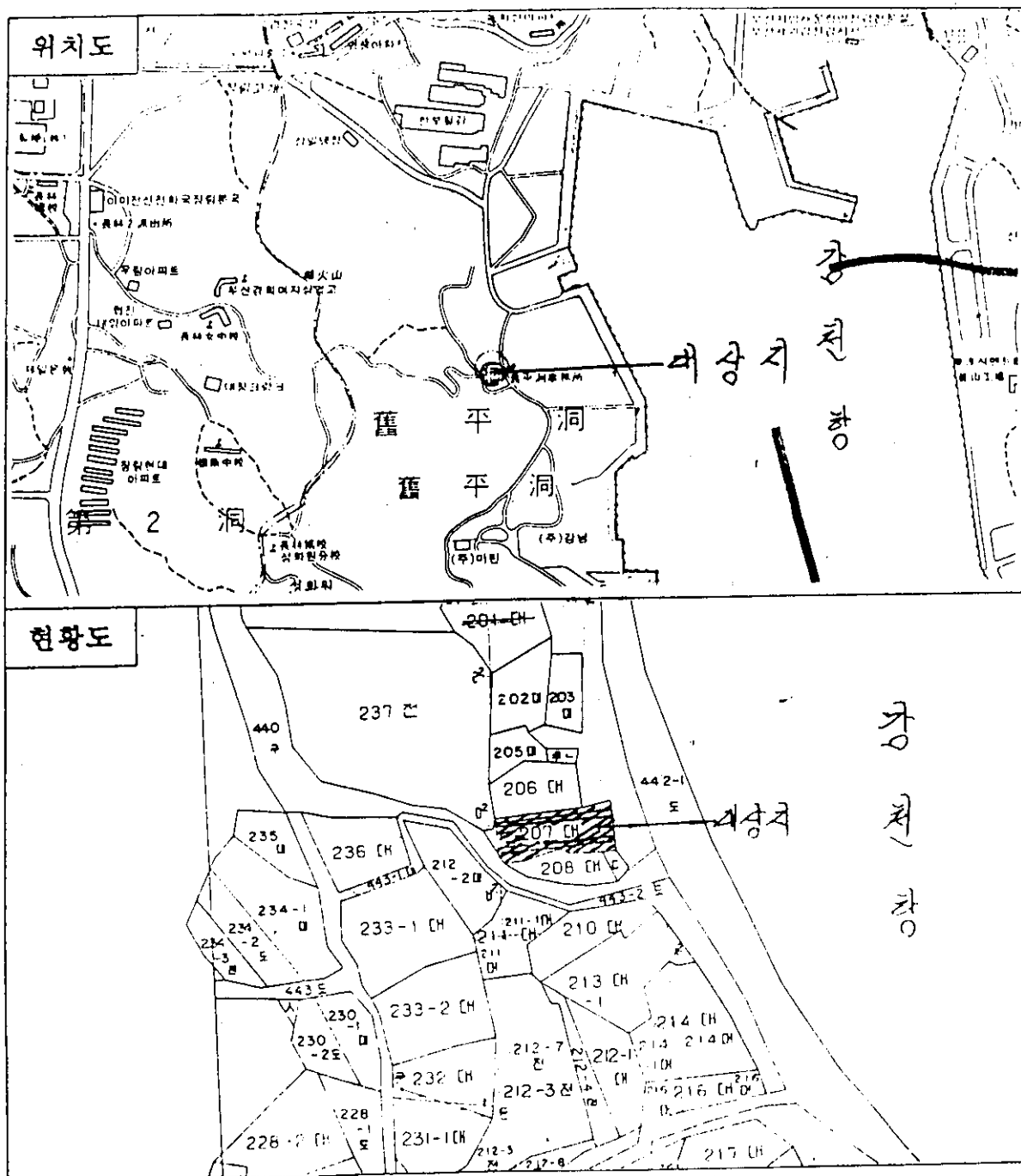
○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제3조 1항

- ① 공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토지 등의 소유자가 입은 손실은 사업의 시행자가 이를 보상하여야 합니다.

7. 위치도 및 현황도 : 따로 붙임

위 치 및 현 황 도

(사하구 구평동 207번지 (구평동사무소))



※ 해당 위치 및 지번에 노란색 형광펜으로 표시